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2307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병도 의원의 33명
- 나. 발의일 : 2021. 4. 2.
- 다. 회부일 : 2021. 4.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한문식 표현을 쉽게 풀어쓰며, 다양해진 세대 구성을 조례에 담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내 성평등 활동지원가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안 제18조제6호).
-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3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구조 및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를 추가하여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센터의 목적에 맞게 수정·반영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가족 유형의 추가 명시(안제19조)

- 개정안은 시민들이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조례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를 포함시켜 명시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략) ② 시장은 <u>한부모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가족</u>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부모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가족·1인 가구</u> -----

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급격한 산업화와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는 가족의 구성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출현시키고 있음.
- 서울시의 1인가구는 2005년 67만 5,739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를 차지하던 것이 2019년 현재는 129만 9,787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33.3%가 1인가구로, 서울시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

<서울시 1인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2005	3,309,890 (100.0)	675,739 (20.4)	670,455 (20.3)	732,043 (22.1)	917,243 (27.7)	314,410 (9.5)
2010	3,504,297 (100.0)	854,606 (24.4)	781,527 (22.3)	788,115 (22.5)	807,836 (23.1)	272,213 (7.8)
2015	3,784,490 (100.0)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701,945 (18.5)	218,894 (5.8)
2016	3,784,705 (100.0)	1,138,860 (30.1)	931,262 (24.6)	816,946 (21.6)	686,469 (18.1)	211,168 (5.6)
2017	3,813,260 (100.0)	1,180,540 (31.0)	956,978 (25.1)	813,629 (21.3)	662,920 (17.4)	199,193 (5.2)
2018	3,839,766 (100.0)	1,229,421 (32.0)	977,469 (25.5)	807,545 (21.0)	676,385 (16.6)	187,945 (4.9)
2019	3,896,389 (100.0)	1,299,787 (33.3)	1,005,065 (25.8)	801,819 (20.6)	614,026 (15.7)	177,692 (4.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2019)

- 서울시는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주민¹⁾ 가구 수는 157,582 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해보면 약 4.1% 정도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8호²⁾에 따라 외국인주민 가족에게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례안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 추가 명시한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안제43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2조³⁾에 따라 설치된 “성평등 활동 지원

1)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90일 초과)를 한 외국인주민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란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을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u>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u></p> <p>4. (생 략)</p>	<p>제43조(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 · 운영 지원</u></p> <p>4. (현행과 같음)</p>

- 이는 현행 조례상의 센터 기능이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평등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개인을 포함하여 모든 성평등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성평등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15동) 6층
개원일	2018.03.27.
위탁현황	<u>(1차) 2017.10.10.~2019.10.10.(2년)</u> (사)여성사회교육원 (대표 : 김희은) <u>(2차) 2019. 10. 11. ~ 2022. 10. 10.(3년)</u>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대표:조영숙)
소요예산	550백만원(`21년)
주요기능	·성평등활동가 성평등·성인지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온오프라인)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 및 공간 제공

□ 그 외 사항

- 그 밖에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된 용어가 누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은, 조문 간 모순이나 충돌이 없이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제18조(일·생활 균형 지원) ----- -----

<p>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u></p> <p>7.·8. (생략)</p> <p>9. 그 밖에 <u>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일·생활 균형</u>----- -----</p> <p>7.·8. (현행과 같음)</p> <p>9. ----- <u>일·생활 균형</u>----- -----</p>
---------------------------------------------------------------------------------------------------------------------------------------------------------------------------	-----------------------------------------------------------------------------------------------------------------------------------------------------------------------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지원 정책의 대상인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추가 명시하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